

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-140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예정인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제34조의2,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,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

○ 필 요 성 :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위탁시설 현황

| 구 분 | 위 탁 대 상 시 설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시설명 | 염리종합사회복지관 |
| 소재지 | 마포구 염리동 14-11 일원 |
| 규모(m ²) | 6810.97 |
| 시설유형 | 신축 |
| 위치도 | |

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455백만원(국비8백만원, 시비1,046백만원, 구비386백만원, 기타15백만원)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2,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2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일정

- 2020. 10. :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

- 2020. 11. ~ 2021. 1. :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

- 2021. 2. : 위탁운영 계약 체결

- 2021. 6. :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개관

〈사회복지사업법〉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제34조의2(시설의 통합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특례)

-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·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·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〈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〉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0.>
-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 <개정 2014. 3. 20.>
- ④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,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0.>
-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0.>